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42
----------	-------

발의연월일 : 2023. 12. 21.

발 의 자 : 김용판 · 하영제 · 백종현
박덕흠 · 서일준 · 박대수
박성민 · 이종성 · 이주환
권명호 · 홍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가 너무 크고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제명 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여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 중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의 경우 폐회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는 감액지급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며 제명시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출마 제한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0조제1항4호, 제100조제3항,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③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의 기간에 해당 지방의회의 폐회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00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00조의3(징계 등의 효력) ① 지방의회의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 동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경고 및 공개회의에서 사과):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등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제100조제1항제3호(30일 이내 출석 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1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100조제1항제4호(90일 이내 출석 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석정지 중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폐회 중인 기간에 한하여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계 등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제5호----- -----. ③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의 기간에 해당 지방의회의 폐회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2(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00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00조의3(징계 등의 효력) ① 지방의회의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 동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방
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경고 및 공개회의에서 사
과):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등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제100조제1항제3호(30일 이
내 출석 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1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100조제1항제4호(90일 이
내 출석 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의정활동비

	<u>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u>
--	---------------------------------